

알아두면 유익한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연금dream 콜센터 1588-4110 www.tp.or.kr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무엇이 있나요?

교직원이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직무상요양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으며, **급여청구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직무상요양급여

- 직무상 사유로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경우
- 직무상요양급여 또는 장애급여 수급자가 치료 후 치료가 필요할 때 (재요양)
- 직무상으로 장애 1~2 등급 확정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간병급여)
- 직무상으로 장애확정 후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보철구수당)

재난부조금

지급 요건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 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원전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39/10 • 주택의 1/2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26/10 • 주택의 1/3이상 소실, 유실 또는 파괴 :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 × 13/10

사망조위금

- 지급요건
 -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지급(선순위자 한명에게만 지급)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급기준

- ▶ 교직원본인 사망시
 - '18. 9. 20 이전 사망시 : 교직원 본인기준소득월액 × 1.95배
 - '18. 9. 21 이후 사망시 : 교직원 본인기준소득월액 × 2배
 -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적용(2018. 9. 21. 이후 사망자부터)

상한액	하한액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 1.6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 0.5배

- ▶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자녀 사망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 0.65배

퇴직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퇴직급여는 사학연금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직 중에 납부한 부담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예시(2016년 이후 퇴직연금 급여산상)

①평균기준소득월액 × 보정률 × ②재직연수 × 지급률(소득재분배 도입)

재직기간 총류

당 월 (기 분)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 → 사망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
합 산	연금법(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는 제도
소급통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병역복무 기간산입	1948.8.15. 이후 현역병 또는 지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공중보건의사('79.1.1.~'92.5.31.) 등에 복무한 기간에 대해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 까지
- 기준소득월액 상한(2016.1.1.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수당 등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의 평균액 × 1.6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대학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 (직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용받는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액

퇴직하면 받게 되는 급여는 무엇이 있는지?

교직원으로 재직 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급여종류	해당 요건
퇴직일시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퇴직한 때
퇴직연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할 때(연금은 개시연령에 도달할 때 지급)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일부기간(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선택하여야 함)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 일시금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조기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한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개시연령 도달 전에 미리 당겨서 조기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퇴직수당

구 분	내 용
재직기간 산입제외 재직기간 감축	'91.10.1. 이후 임용자로서 합산, 소급통산, 복무기간산입 기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 한 경우 지급

장애급여

구 분	지급요건	
직 무 상	장애연금	직무상 사유로 장애확정 후 퇴직하거나 퇴직 후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확정된 경우
	장애일시금	장애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비직무상	장애연금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등급이 제1급~제7급에 해당될 때
	장애일시금	직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되어 퇴직할 때 또는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등급이 제8급~제14급에 해당될 때

내 퇴직급여 알아보기

- 교직원의 개인별 예상퇴직급여는 공단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을 가입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단홈페이지(<http://www.tp.or.kr>) ▶ 개인회원가입 ▶ 로그인 ▶ 조회 ▶ 급여조회 ▶ 예상퇴직급여 (※ 참고로, 예상퇴직급여는 1월과 7월에 변동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형벌이 있으면 급여가 제한 되나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 금고·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을 당한 경우 급여를 제한합니다.

급여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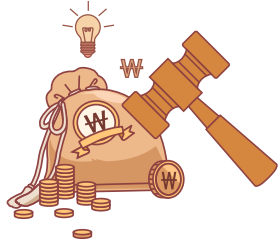
구 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5년 미만	5년 이상	
금고 이상의 형	1/4	1/2	1/2
탄핵·징계에 의한 파면	1/4	1/2	1/2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유용으로 징계 해임	1/8	1/4	1/4

- 1) 직위와 무관한 과실,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은 제외
- 2)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하지 않음

- **급여유보란** 퇴직 당시 수사·형사재판 계류 중인 상황을 의미하며, 이런 경우 급여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였다가 추후 형 확정 결과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유보했던 급여(이자 가산)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의 사항

당연퇴직 시점에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당연퇴직'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퇴직하여 급여를 청구한 경우, 당연퇴직일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간 대한 퇴직급여는 급여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면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65세로 사학연금 가입 시기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95.12.31 이전 임용자

- 2021. 1. 1. 이후 퇴직한 경우 만60세 도달시 지급('96. 1. 1. 이후 임용자 중 '95.12.13. 이전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교직원 포함)
- 2000년말 당시 20년 미만자로서 미달기간 2배 근무 후 퇴직한 다음달 부터 지급

'96. 1. 1 이후 임용자

- 퇴직연도에 따른 연금지급 개시연령 도달시 지급

퇴직연도	'16 ~ '21년	'22 ~ '23년	'24 ~ '26년	'27 ~ '29년
지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퇴직연도	'30 ~ '32년	'33년 ~	-	-
지급연령	만64세	만65세	-	-

분할연금제도

- 교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급여를 청구 시 지급되는 급여

구 분	내 용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인 배우자 ● 2016.1.1.(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한 사람부터) 												
충족 요건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 65세가 되었을 것 ※ 경과조치에 따라 아래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table border="1"> <tr> <td>'16~'21</td> <td>'22~'23</td> <td>'24~'26</td> <td>'27~'29</td> <td>'30~'32</td> <td>'33~</td> </tr> <tr> <td>60세</td> <td>61세</td> <td>62세</td> <td>63세</td> <td>64세</td> <td>65세</td> </tr> </table>	'16~'21	'22~'23	'24~'26	'27~'29	'30~'32	'33~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16~'21	'22~'23	'24~'26	'27~'29	'30~'32	'33~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청구 시기	● 위 기본요건 모두 충족시로부터 3년 이내												
분할연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당사자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별도 지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연금지급정지란 연금수급자가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이 '공무원연금규정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액 전액정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으로 재임용된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2016. 1. 1. 시행)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전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이상·전액정지
- 전년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미만·일부정지

연금액 일부정지

연금이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각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 1/2 범위 내에서 초과소득에 따른 일정비를 지급을 정지합니다.

초과소득월액	연금지급 정지금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 × 3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50,000원 + 50만원 초과금액의 40%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350,000원 + 1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00,000원 + 150만원 초과금액의 60%
200만원 이상	900,000원 + 200만원 초과금액의 70%

- 1) 2020년도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 2,370,000원
- 2)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 기준
- 3) 이자 및 배당소득은 제외
- 4)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

정지기간

급여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된 달까지의 기간

대여제도 안내

공단은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연금기금의 일부로 생활자금 대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 학사과정 등록금에 대한 국고학자금대여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무이자로 대출하고 있습니다.

생활자금대여

구 분	대여한도	
재직자 중	재직자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 내에서 6,000만원 이내
	단기재직자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1,000만원 이내(보통설정) - 퇴직급여 예상액이 2,000만원 미만인 교직원
	행복나눔대여	● 퇴직급여 예상액 1/2범위/3,000만원 이내(보통설정) - 신혼대여, 출산대여, 다자녀대여, 든든대여, 한부모가정대여, 노부모부양대여, 유아휴직대여, 질병휴직대여
연금수급자	1,000만원 이내	

※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에서 대여금 미상환잔액을 전액 공제(급여 청구시 사전문의)

국고학자금대여

구 분	내 용	
대여한도 (개인회생 중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교직원) 퇴직급여이내 ● (재임용합산교직원) 연금월액 예상액 3년분 이내 	
국내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1학기(1.1 ~ 6.15), 2학기(7.1 ~ 12.15) ● 신청금액 : 실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범위내 등록금 중 일부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제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1학기(1.1 ~ 6.15), 2학기(7.1 ~ 12.15) ● 신청금액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교육비
외국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간 : 등록금 납부기한 2개월전, 4개월 후 이내 ● 신청금액 : 연간 \$10,000(미화)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여학연수로 등은 제외 	

※ 퇴직(사망)시에는 퇴직급여에서 대여금 미상환잔액을 전액 공제(급여 청구시 사전문의)

대여신청, 상환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연금dream 콜센터(1588-41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연금지급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재계산한 후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우선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수급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자 : 2002. 1. 1. 이후 퇴직한 퇴직연금수급자 (분할연금포함)
- 연말정산 시기 : 다음연도 1월 연금지급시 정산(징수 또는 환급)
-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교부

교부대상	교부시기
2002.1.1.이후 퇴직한 연금수급자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부 (홈페이지 탑재)

유의 사항

- 연금에 대한 최초 과세발생 시 또는 매년 연말정산 시 매월 연금지급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소득간이 원천징수 공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로 안내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의 항목은 연금소득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은 인적공제만 해당합니다.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을 받으면서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및 적용기준

과세방법	소득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합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
	부동산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 가능
	근로·사업소득	무조건 종합과세(일용직 제외)
분리과세	연금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별도과세

※ 분리과세 : 일용직근로소득, 3천만원이하 기타소득,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종합소득 신고대상 및 시기 등

신고대상자	시기및 장소
소득종류가 2가지 이상의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시기 : 매년 5.1 ~31일까지 · 신고장소 : 연금수급자의 해당주소지 관할세무서

※ 종합소득신고예외 : 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있고 다른 소득의 종류가 분리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인,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료 부담 없는 피부양자 요건

- 부양(관계), 소득,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소득요건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등급을 매겨 점수를 산정한 다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이란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납부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였던 금액으로 3년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최초 고지 지역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는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소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 -10년('16. 1.1.부터 시행)

연계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를 받게 되며,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52년 이전	'53~'56년	'57~'60년	'61~'64년	'65~'68년	'69년 이후
수급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급여의 수급연령(65세) 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따릅니다.

유의사항(연계 신청시 꼭 알아 두어야 할 내용)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연계신청 결과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 연금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연계급여 수급연령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기관에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퇴직연금(직역) 또는 노령연금(국민)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